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6. 8. 10.>

평생교육 관련 과목(제5조제1항 관련)

<table>
<tr><th>과정</th><th>구분</th><th>과목명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양성과정</td><td rowspan="2">필수</td><td>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</td></tr>
<tr><td>평생교육실습(4주 이상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선택</td><td>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자해득교육론, 특수교육론, 성인학습 및 상담(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)</td></tr>
<tr><td>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직업·진로설계, 원격(이러닝, 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환경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 상담심리학(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비고
1.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.
2.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3.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,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4.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의 4주 이상(총 수업일수 20일 이상, 총 수업시간 160시간 이상)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.</td></tr>
</table>